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



이 원 응
<농림부 축정과>

축산업(畜産業)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租稅減免措置)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 법령(關係法令)의 공포(公布) 이래 그 내용을 간추려서 유인물(油印物) 등을 통하여 여러번 선전되었으나, 이것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축산인들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적용면에서도 잡다(雜多)한 문제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고찰(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세법상(稅稅上)의 감면 혜택(減免惠擇)

1. 소득세(所得稅) 법인(法人)인 경우는 법인세(法人稅)

소득세는 축산업을 영위(營爲)하므로써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1969년부터 75년까지 7년간은 전액 면제되고 1976년부터 78년까지 3년간은 50%를 감면하므로써 1969년부터 1978년까지 10년간 감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축산업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同法施行令)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規定)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所得稅法施行令) 제13조의 6(축산업의 범위)[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축산업”이라 함은 소·말·양·돼지·토끼·친칠라·사슴·밍크·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 증식(飼育增殖)[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69. 8. 20, 대통령령 4015).] 채란(採卵) 채모(採毛) 착유(搾乳) 등을 하는 사업(事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개념(概念)을 뚜렷이 해야 할 곳은 “증식(增殖)”이라는 말과 “사업(事業)”이라는 말인 것이다. 즉 “축산

사업(畜産事業)”이란 무엇이나 하는 것을 그 규모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정의(定義)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실제 소득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증식(增殖)”이란 말은 69. 8. 20, 대통령령 4015호로 부화업에 대한 언급이 있기 전에는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현대 양계에 있어서의 유일한 증식 수단(增殖手段)인 부화업이 축산업임을 두말할 여지가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8호에 부화업을 과세 소득(課稅所得)의 범위에 해당시킨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우선 과세 대상으로 보고 69년도 1기분에 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세청의 처분은 동법령(同法令)의 해석상 다음과 같은 무리(無理)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8호보다 신법(新法)인 제13조의 6(신설 69. 1. 6, 대통령령 3699)에서 말하고 있는 “……가금, 꿀벌의 사육, 증식……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는 규정에 부화업이 해당된다면 동일한 법령에 상호 위배되는 사항이 규정 되었으므로 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축산법에서도 부화장의 등록 등 그 감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9. 8. 20일자 대통령령 제4015호로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증식(增殖)”이라는 말 안에 삽입하여 동법령(同法令)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1969. 1. 6일자 대통령령 제3699호에서 규정하는 “증식(增殖)”이라는 말 안에는 부화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축

산법(畜産法)에 의거 등록되지 아니한 부화업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課稅)한다는 것만이 새로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취해졌던 국세청의 처분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7에서 축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 감면 신청을 소관(所管) 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 감면 신청이 선행(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의무는 이행하여야 될 사람 스스로가 잘 알아서 이행하여야 하겠지만 각자에게 직결되는 수많은 법령을 모두 잘 알기도 힘든 일이므로 일선 세무당국에서도 “당신은 법에서 정한대로 세액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외면하기에 앞서 친절히 안내하고 또한 성실하게 이행할 일은 이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처사일 것이다.

2. 재산세(財産稅)와 취득세(取得稅)의 면제

(1) 제세감면 규제법 제9조 제4항

“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재산세를 즉시 추징(追徵)한다 (개정1968. 12. 17, 법 2053호).”

(2) 조세감면 규제법 제10조 제2항 9호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재산세 및 취득세의 면제기간은 69년부터 78년까지 10년간 면제하도록 부칙(附則)에 명시됨]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과세청이 시, 군, 구청이며 전기한 법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업”이니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이니 하는 말들이 있어 처음에는 동법(同法)의 적용상 상당한 물의가 있었으나 동법은 다음과 같이 해석 및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축산업”은 현재 사업으로서의 규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가축이 사육 또는 증식되는 것은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축산업”이라 해석되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거나……”하는 규정은 축산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不動産投機)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현재 농림부에서는 동법에 준하여 기준과 요건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전기 규정(前記規定)은 현재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섯마리의 소를 기르기 위하여 토지를 백만평을 샀다던가, 백마리를 기르기로 하고 백정보의 토지를 취득하고 실지는 열 마리 밖에 사육하지 않는 경우도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나 백만평 전부가 소 다섯 마리를 기르는데 모두 사용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축의 종류와 수에 따라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이용의 상한선만 정하여 동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과세청으로 되어 있는 시, 군, 구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 이용의 상한선은 다음 표와 같다.

건물 및 토지 이용의 상한선

구분	사업별	가축두수(두)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ha)
			축사(평)	부대시설(평)	시설부지(평)	
한우	사육사업	1	1.5	0.5	10	1
	비육사업	1	1.5	0.5	10	0.2
유우	목장사업	1	2.5	0.5	10	1
	양돈사업	10	5	2	50	1
돼지	양돈사업	5	10	4	25	—
	채란·육계	100	10	5	20	—
가금	부화사업	10,000개입 1내당	10	5	20	—
사슴	목장사업	10	20	5	50	1
토끼	사육사업	100	10	20	100	—
밍크	사육사업	5	2	2	10	—